

■ 국적법 시행령 [별표 2] <신설 2022. 12. 20.>

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 시 구체적 고려사항(제18조의2제2항 관련)

1. 법 제14조의2제1항 따른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를 신청한 사람(이하 이 표에서 “신청인”이라 한다)의 출생지 및 복수국적 취득경위
2. 신청인의 주소지 및 주된 거주지가 외국인지 여부
3. 대한민국 입국 횟수 및 체류 목적·기간: 별표 1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할 것
 - 가. 신청인의 대한민국 입국 횟수 및 체류 목적·기간
 - 나. 신청인의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대한민국 입국 횟수 및 체류 목적·기간
4. 대한민국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였는지 여부: 다음 각 목의 권리를 행사하였는지를 고려할 것
 - 가. 「교육기본법」 제8조제2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
 - 나.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9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
 - 다. 「정당법」 제22조에 따른 당원이 될 수 있는 권리
 - 라. 「국가공무원법」(같은 법 제26조의3제1항은 제외한다) 및 「지방공무원법」(같은 법 제25조의2제1항은 제외한다)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권리
 - 마. 그 밖에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외국인의 권리 행사가 전부 또는 일부 제한되는 권리
5. 복수국적으로 인하여 외국에서의 직업 선택에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할 것
 - 가.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인의 생활상 지위에 현저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
 - 1) 외국의 공직, 안보 등과 관련한 특정 직업을 수행하거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
 - 2) 외국에서 학업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
 - 3) 신청인의 생활상 지위에 현저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1) 및 2)에 준하는

경우

나.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외국 국적을 보유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이에 준하는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

6.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과 조화되는지 여부: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

가. 신청인의 성장 환경, 학업, 직업 등 생활 환경

나. 국적의 이탈 허가 신청의 시기 및 사유

다. 그 밖에 신청인의 국적 이탈 허가 시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을 훼손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